

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



안전은 권리입니다

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(www.koshasafety.co.kr)이란?

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, 안전보건관리체계, 보도자료, 참고자료 등을 **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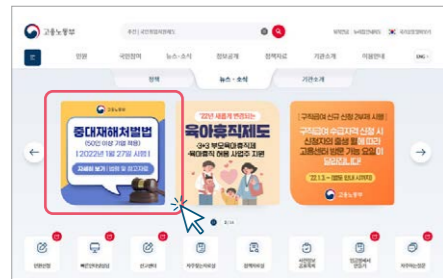
누리집 Q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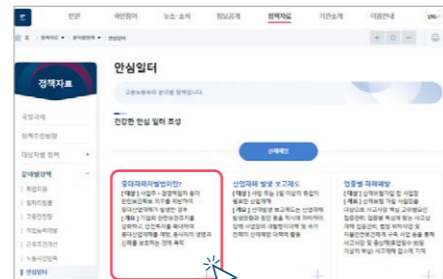
- 법령 자료 (법, 시행령, 해설서 등)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(가이드북, 자율점검표, 자율진단표)
- 보도자료 • 홍보·안내 자료 (시행 안내서, 안내 동영상, 리플릿 등)

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

1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
메인화면 연결배너 **클릭**



2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→ 안심일터
→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**클릭**



3 안전보건공단 누리집

- 1 자주 찾는 메뉴 → 중대재해처벌법 **클릭**
- 2 팝업존 → 연결배너 **클릭**



•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화면



• 연결 배너
이미지



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



2024년 중대재해 산업안전지킴이
산업안전예방 자율점검표 설문

참여방법1 ▶ URL 접속

<https://moaform.com/q/ZfQerp>

참여방법2 ▶
QR코드 접속



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

안전은 권리입니다

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

중대재해처벌법이란? (중대산업재해 부분)

※ 시행일: '22. 1. 27.(50인 미만 사업장 등 '24. 1. 27.)

1

-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,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
-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

- 사망시**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- 그외**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*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,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/2 까지 가중
- 양벌규정(법인)**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,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



중대산업재해란?

2

산업재해 중

[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]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·부상·질병을 의미

- 1 사망자 발생 1명 이상
- 2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
- 3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*

*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(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) /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/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/ 독성간염 / 혈액전파성 질병(B형간염, C형간염, 매독,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) / 렘트스피라증 / 탄저·단독·브루셀라증 / 레지오넬라증 / 감압병·공기색전증 / 산소결핍증 / 급성방사선증·무형성빈혈 / 열사병



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?

3

- 사업주**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(개인사업주에 한함)
- 경영책임자** 사업을 대표·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(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)

※ 단,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

- 사업주·법인·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

- 종사자** 근로자,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·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



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?

3

-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 - 1)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 - 2) 안전·보건업무 총괄·관리 전담조직(500인 이상,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)
 - 3)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 - 4)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·집행
 - 5)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 - 6)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배치(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)
 - 7)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 - 8) 중대산업재해 발생(급박한 상황 포함)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
 - 9) 도급, 용역,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관리비용·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, 이행여부 점검
*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

-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4 안전·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1) 안전·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(안전·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)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
- 2) 유해·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, 5년간 보관하여야 함(소상공인 제외)



안전보건교육과 공표

4

- 중대산업재해 발생 → 안전보건교육(20시간 이내) 의무(교육비용 본인부담)

- 주요내용**
 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방안
 -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

- 주요절차**
 - 교육기관,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(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·법인의 경영책임자)에게 통보, 연기요청(1회에 한함)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

- 중대산업재해 발생 +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+ 형의 확정 + 법무부장관의 통보 →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(1년간 게시, 소명기회 부여)

- 주요내용**
 - 해당 사업장의 명칭
 -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·장소
 -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
 -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(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위반사항 포함)
 -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

